

신탁계약서 변경비교표

□펀드명 : 트러스톤 ESG 제갈공명 증권 투자신탁[주식]

변경 사유	변경 전	변경 후
클래스 신설	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 ① ~ ②(생략) ③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서 발행할 수 있는 수익증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~ 8. (생략) <신설>	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 ① ~ ②(현행과 같음) ③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서 발행할 수 있는 수익증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~ 18. (현행과 같음) <u>19. F클래스 수익증권 : 법시행령 제10조제2항에서 규정한 금융기관 및 법시행령 제10조제3항제12호·제13호에서 규정한 기금 및 법인, 집합투자기구, 최초 납입금액이 100억 이상인 내국법인</u>
클래스 신설	제10조(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)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신탁원본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무액면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(이하 “전자증권법”이라 한다)」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해당 수익증권을 전자등록한다. 1. ~ 14. (생략) <신설> ② ~ ④ (생략)	제10조(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)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신탁원본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무액면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(이하 “전자증권법”이라 한다)」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해당 수익증권을 전자등록한다. 1. ~ 18. (현행과 같음) <u>19. F클래스 수익증권</u> 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변경 사유	변경 전	변경 후
클래스 신설에 따른 보수 신설	제38조(보수) ① ~ ② (생략)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 보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로 다 음 각 목의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 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(매일의 투자신탁 순자 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 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)에 보수 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. 1. ~ 14. (생략) <신설>	제38조(보수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 보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로 다 음 각 목의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 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(매일의 투자신탁 순자 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 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)에 보수 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. 1. ~ 18. (현행과 같음) <u>19. F클래스 수익증권</u> <u>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</u> <u>1000분의 7.5</u> <u>나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</u> <u>분의 0.1</u> <u>다. 신탁업자보수율 : 연 1000</u> <u>분의 0.2</u> <u>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0.15</u>
-	<신설>	<u>부칙</u> <u>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은 2025년</u> <u>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.</u>